

제283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60 호
- 제 출 자 : 양순임 의원 외 14명
- 제 출 일 : 2021. 5. 27.
- 회 부 일 : 2021. 5. 28.

2. 제안이유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컵, 봉투 등) 사용을 3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할 계획임.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아울러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사용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 나. 추진계획의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우수업소 지정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안 제7조)
- 다. 1회용품 줄이기 교육과 지원 및 홍보 (안 제8조~제9조)
- 라. 행정·재정적 지원과 표창(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2021. 6. 4.

5. 검토의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의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과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낭비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환경적으로는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진 1회용품이 재활용이 어려워져 적정하게 수거되거나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2018.11.22.)하였으며 계획 시행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며, 대규모 업체부터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원 등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의 제정과 확실한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